

1. 개정이유

현행 장기소요 결정 원칙을 안보상황과 기술발전수준 등을 고려하여 중기 또는 장기소요로 결정하도록 하고 군용총포등 제조업체를 양수한 자가 양수 사실을 방사청장에게 통보함으로써 종전 업체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시행령에 규정함에 따라 통보 관련 세부절차 및 서식 규율하는 등 제도개선 내용을 반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무기체계 소요절차 개선 등(안 제7조)

- 1) 무기체계 소요결정 시 안보상황과 무기체계의 기술발전 수준을 고려하여 중기 또는 장기소요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시범 적용 등을 통해 신기술의 군 활용성이 확인된 경우에는 긴급소요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함
- 2) 중기소요 전환 시 선행연구 또는 탐색개발 결과를 반영하도록 하고 있으나, 중기전환 시기를 보다 탄력적으로 조절할 수 있도록 선행연구 또는 탐색개발이 완료된 경우 그 결과를 반영하도록 함

나. 총수명주기관리를 위해 무기체계 획득 시 통합체계지원요소 개념 반영 및 관련 업무추진 근거 마련(안 제18조, 제20조)

무기체계의 총수명주기관리 제도개선 일환으로 종합군수지원요소를 전체 수명주기 단계를 포괄하는 개념의 통합체계지원요소로 수정하는 시행령 개정에 따라 종합군수지원요소를 통합체계지원요소로 수정

다. 소요제기기관의 분석업무 수행 근거 명확화(안 제20조)

소요제기기관의 소요제기 기능 강화 방향에 맞추어, 소요제기 시 과학적 비용분석 및 검증 등 분석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근거 명확화
라. 품질경영체제인증 신청 대상 등 명확화(안 제25조)

품질경영체제인증 제도 적용 대상이 방위사업법과 동일하게 규정되도록 관련 문구 수정

마. 군용총포등 제조업 허가 갈음 절차규정 등 (안 제43조의2조)

군용총포등 제조업체를 양수한 자가 양수 사실을 방사청장에게 통보함으로써 종전 업체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시행령에 규정함에 따라 통보 관련 세부절차 및 서식 규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의 : OOOO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9999. 12. 31. ~ 12. 3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방위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방위사업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본문 중 “원칙적으로 장기소요로 결정하여야 한다”를 “안보 상황과 기술발전수준 등을 고려하여 중기 또는 장기소요로 결정한다”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인하여 장기소요로 결정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중기소요 또는”을 “인한 소요와 시범 적용 등을 통해 신기술의 군 활용성이 확인된 경우에는”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선행연구 또는 제10조제1항제1호에 따른 탐색개발의 결과를 반영하여 중기소요”를 “중기소요”로 하고, 같은 항 후단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이 경우 제9조제1항에 따른 선행연구를 실시한 사업이나 제10조제1항제1호에 따른 탐색개발을 실시한 사업의 경우는 그에 따른 결과를 반영할 수 있다.

제7조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제5항 및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합동참모의장은 제3항에 따라 장기소요를 중기소요로 전환하는 경우 영 제2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진화적 작전운용성능의 목표를 결정할 수 있고 다음 단계의 진화적 작전운용성능의 목표를 잠정적으로 제시할 수 있다.

제18조의 제목 “(종합군수지원요소)”를 “(통합체계지원요소)”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종합군수지원요소를 확보하는”을 “통합체계지원요소를 확보하는”으로, “종합군수지원계획”을 “수명주기관리계획”으로, “종합군수지원요소를 확보하여야”를 “통합체계지원요소를 확보하여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종합군수지원요소”를 “통합체계지원요소”로 한다.

제20조제3항제4호나목 후단 중 “종합군수지원요소”를 “통합체계지원요소”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국방부장관은 각군 참모총장으로 하여금 소요제기 시 소요의 과학적 분석 및 검증을 위해 필요한 분석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제2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방산업체등은”을 “업체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 중 “방산업체등은”을 각각 “업체”로 하며, 같은 조 제7항 중 “방산업체등”을 “업체”로 한다.

제43조의2부터 제43조의5까지를 각각 제43조의3부터 제43조의6까지로 하고, 제4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3조의2(군용총포·도검·화약류 제조업체 양수 사실의 통보) 영 제66조제8항에 따른 통보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4호의13서식의 제조업체 양도·양수 통보서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방위사업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영 제66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 및 제8호의 허가증
2. 제조업체 양도·양수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별표 1 제9호 중 “슬라브”를 “슬래브”로 한다.

별지 제8호서식 및 별지 제8호의2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4호의9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4호의13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15호서식 제9호 중 “지불한다”를 “지급한다”로 하고, 같은 서식

제11호 중 “지불한다”를 “지급한다”로 한다.

별지 제26호서식 중 “지불시기”를 “지급시기”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계약전 승인요청서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일	처리기간	15일
요청인 (업체)	업체명				
	대표자		전화번호		
	업종 및 주 생산품				

승인 요청 내용

계약 전 승인대 상	품명		수량	금액	검토 부서	사유
	방산물자	원자재 및 부품				
방산물자 생산						
방산물자 원자재 및 부품 확보						

「방위사업법 시행령」 제50조제3항 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승인을 요청합니다.

이
이
이

요청인

(서명 또는 인)

방위사업청장 귀하

처리절차

```

graph LR
    A[신청  
요청인(업체)] --> B[심사  
방위사업청  
(계약 전 승인담당부서)]
    B <--> C[협의  
• 서류와 내용의 타당성  
• 예산반영, 물량, 국방규격화 등  
방위사업청, 각 군  
(계약부서, 사업부서 등)]
    C --> D[승인  
방위사업청  
(계약 전 승인담당부서)]
    D --> E[결과 통지  
요청인(업체), 협의부서]
  
```

	처리절차	
첨부서류	1. 생산납품공정계획표(승인시와 미 승인시를 구분하여 생산납품공정 비교 표기) 2. 세부 품목 내역 3. 각서 4. 필수소요 관급부품 및 업체현황(완제품 생산업체만 해당) 5. 필수소요 관급부품 납품업체의 각서(완제품 생산업체만 해당)	수수료 없음

계약전 품질확인요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일	처리기간	15일	
업체명					
대표자		전화번호			
업종 및 주 생산품					
품질 보증 대상	품명	수량	금액	품질보증 기관	사유
방산물자					
방산물자 원자재· 부품					

「방위사업법 시행령」 제50조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품질확인을 요청합니다.

년 월 일

요청인

(서명 또는 인)

방위사업청장 귀하

처리절차		
신 청 요청인(업체)	→ 심 사 방위사업청 (계약 전 승인담당부서)	→ 승 인 방위사업청 (계약 전 승인담당부서)
		→ 결과 통지 요청인(업체), 협의부서 방위사업청 (계약 전 승인담당부서)
		↓ 품질보증 활동 지시/협조 (국방기술품질원, 각 군 등) 방위사업청 (계약 전 승인담당부서)
첨부서류	1. 계약 전 생산 및 원자재·부품 확보 승인 공문	
	수수료 없음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총 포
군용 [] 도 검 운반 허가 신청서
[] 화약류

※ []에는 해당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일	처리기간	10일
------	-----	-----	------	-----

신청인	상호/기관명	
	성명(대표자)	전화번호
	주소	

품명	수량	운반목적	운반구간	
			에서	로

「방위사업법」 제53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의2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운반 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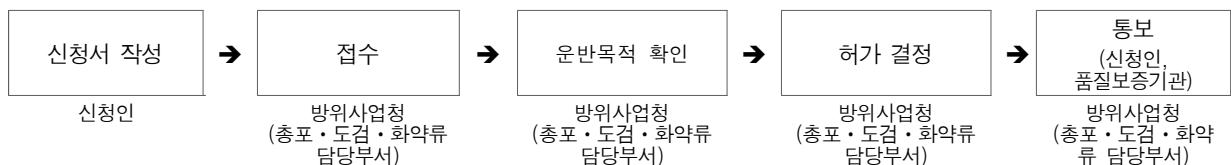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방위사업청장 귀하

첨부서류	1. 조달계약서, 군용총포 등 양도·양수 허가 문서, 방산물자 생산 및 매매계약 승인 문서, 기관 또는 업체 간 물품구매계약서 등 운반 목적을 증명하는 서류 2. 군용총포·도검·화약류 운반에 관한 고시 별지 제1호서식의 군용총포·도검·화약류 안전 운반/관리 계획서	수수료 없음
------	--	-----------

처리절차



군용총포·도검·화약류 제조업체 양도·양수 통보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즉시
양 도 자	대 표 자	성명	전화번호		
		주소			
	법 인	명칭	전화번호		
		주소			
양 수 자	대 표 자	성명	전화번호		
		주소			
	법 인	명칭	전화번호		
		주소			
사업장	명칭(상호)	변경 전	변경 후		
	영업의 종류	허가의 종류 및 허가번호			
	소재지	(전화번호 :)			

「방위사업법」 시행령 제66조제8항에 따라 위와 같이 군용총포·도검·화약류 제조업체의 양도·양수를 통보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방위사업청장

귀하

첨부서류	1. 방위사업법 시행령 제66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8호의 허가증 2. 제조업체 양도·양수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수수료 없음
------	--	-----------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7조(소요결정의 절차 등) ① (생략)	제7조(소요결정의 절차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합동참모의장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소요를 결정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장기소요로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사변·해외파병·적의 침투·도발 또는 테러 등으로 인하여 장기소요로 결정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중기소요 또는 긴급소요로 결정할 수 있다.	② ----- ----- -- <u>안보상황과 기술발전수준 등을 고려하여 중기 또는 장기소요로 결정한다.</u> ----- ----- <u>인한 소요와 시범 적용 등을 통해 신기술의 군 활용성이 확인된 경우에는</u> ----- -----.
③ 합동참모의장은 장기소요로 결정된 무기체계에 대하여 선행연구 또는 제10조제1항제1호에 따른 탐색개발의 결과를 반영하여 중기소요로 전환할 수 있다. 이 경우 영 제22조제2항에 따른 진화적 작전운용성능의 목표를 결정할 수 있고, 다음 단계의 진화적 작전운용성능의 목표를 잠정적으로 제시할 수 있다.	③ ----- ----- <u>중기소요</u> ----- ----- ----- ---. <u>이 경우 제9조제1항에 따른 선행연구를 실시한 사업이나 제10조제1항제1호에 따른 탐색개발을 실시한 사업의 경우는 그에 따른 결과를 반영할 수 있다.</u>
<신 설>	④ 합동참모의장은 제3항에 따라 장기소요를 중기소요로 전환

④ · ⑤ (생략)

제18조(종합군수지원요소) ①방위사업청장이 영 제28조제1항제2호에 따른 종합군수지원요소를 확보하는 경우 획득된 무기체계가 「군수품관리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폐기될 때까지 효율적이고 경제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종합군수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종합군수지원요소를 확보하여야 한다.

②방위사업청장이 제1항에 따라 종합군수지원요소를 확보·지원하는 경우 그 내용·지원항목 및 범위 등은 국방부 및 각군의 의견을 반영하여 이를 정하여야 한다.

제20조(분석·평가의 방법 및 절차 등) ① · ② (생략)

하는 경우 영 제2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진화적 작전운용성능의 목표를 결정할 수 있고 다음 단계의 진화적 작전운용성능의 목표를 잠정적으로 제시할 수 있다.

⑤ · ⑥ (현행 제4항 및 제5항과 같음)

제18조(통합체계지원요소) ①-----
----- 통합체계지원요소를 확보하는 -----

----- 수명주기관리계획 -----
----- 통합체계지원요소를 확보하여야 --.

②-----
-- 통합체계지원요소-----

-----.

제20조(분석·평가의 방법 및 절차 등) ① · ② (현행과 같음)

에 따른 조치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신 설>

제25조(품질경영체제인증) ① (생략)

② 법 제29조의2제1항에 따른 품질경영체제인증(이하 “품질경영인증”이라 한다)을 신청하려는 방산업체등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야 한다.

1.·2. (생략)

③ 국방기술품질원장은 법 제29조의2제2항에 따라 방산업체등으로부터 품질경영인증 신청을 받은 경우 품질경영인증기준을 적용하여 서면 및 현장 심사를 실시해야 한다.

④ 국방기술품질원장은 법 제29조의2제3항에 따라 방산업체등으로부터 품질경영인증 갱신의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품질경영인증기준을 적용하여 현장 심사

-----.

④국방부장관은 각군 참모총장으로 하여금 소요제기 시 소요의 과학적 분석 및 검증을 위해 필요한 분석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제25조(품질경영체제인증) ① (현행과 같음)

② -----

--- 업체는 -----
-----.

1.·2. (현행과 같음)

③ -----
----- 업체 -----

-----.

④ -----
----- 업체 -----

를 실시해야 한다.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국방기
술품질원장은 국가적 재난, 감
염병 유행 등 부득이한 사유로
품질경영인증의 유효기간 만료
전에 제4항에 따른 현장 심사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현장 심사
를 갈음하여 방산업체등으로부
터 품질경영체제의 실행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등을 제출
받아 심사를 할 수 있다.

⑥ (생략)

⑦ 법 제29조의2제4항에 따라
사후관리심사를 하는 경우 국방
기술품질원장은 품질경영체제
의 실행이 우수하여 방위사업청
장이 정한 포상 등을 받은 방산
업체등에 대하여 사후관리심사
를 면제할 수 있다.

⑧ (생략)

<신설>

-----.

⑤ -----

----- 업체 -----

-----.

⑥ (현행과 같음)

⑦ -----

----- 업체 -----

-----.

⑧ (현행과 같음)

제43조의2(군용총포·도검·화약
류 제조업체 양수 사실의 통보)
영 제66조제8항에 따른 통보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4호의13서
식의 제조업체 양도·양수 통보
서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방위

<u>제43조의2</u> ~ <u>제43조의5</u> (생략)	<u>사업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u> <u>1. 영 제66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 및 제8호의 허가증</u> <u>2. 제조업체 양도·양수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u> <u>제43조의3</u> ~ <u>제43조의6</u> (현행 제43조의2부터 제43조의5까지와 같음)
---	--